

「평창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#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사경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5. 8. 21(금) 평창군수(기술지원과장)

나. 회부일자 : 2015. 9. 8(화)

다. 상정일자 : 2015. 9. 14(월) 제212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

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상정·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자 : 기술지원과장 김영기)

- 귀농인에게 한정된 지원 조례를 귀촌인까지 확대하여 귀농·귀촌인들을 대상으로 교육 및 체험 활동 등 귀농·귀촌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군민 증가 시책에 기여하고
-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귀농인의 연령 제한, 신고 조항 등을 삭제하고, 현재 추진 중인 지원 사업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사업의 일관성 및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: 이용섭)

- 본 개정안은 귀농인에게 한정된 지원 조례를 귀촌인까지 확대하여 귀농·귀촌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군민 증가 시책에 기여하고

-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귀농인의 연령 제한, 신고 조항 등을 삭제하고, 현재 추진 중인 지원 사업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사업의 일관성 및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
- 주요내용은 제명 변경, 지원대상을 귀촌인까지 확대, 상위법 미근거 및 불필요한 조항 삭제, 귀농·귀촌인 지원 사항 보완 및 신설로 본 조례 개정에 따라 귀농·귀촌인 지원이 활성화 되어 군민 증가 시책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되며,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음.

####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#### 5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#### 6. 소수의견 요지

- 평창군만의 차별화된 지원 정책의 필요성과 전문상담인력 확보 및 활성화 프로그램 발굴 등 귀농·귀촌인들이 머물수 있는 복합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.

#### 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**【붙임】** 평창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## 평창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평창군 귀농인 지원 조례”를 “평창군 귀농·귀촌인 지원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귀농인”을 “귀농·귀촌인”으로 한다.

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“귀촌인”이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던 자로써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경영 이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귀농인”을 “귀농·귀촌인”으로, “평창군귀농인지원위원회”를 “평창군 귀농·귀촌인 지원위원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“귀농”을 “귀농·귀촌”으로 한다.

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귀농인”을 “귀농·귀촌인”으로 한다.

제9조를 삭제한다.

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귀농인”을 “귀농·귀촌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귀농·귀촌 교육훈련, 교육장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
5. 주택 집수리 지원 사업
6. 그 밖에 귀농·귀촌 활성화 및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제11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귀농인”을 각각 “귀농·귀촌인”으로 한다.

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귀농인”을 “귀농·귀촌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할 때 같은 조 제5호 중 “귀농인”을 “귀농·귀촌인”으로 한다.

제13조 중 “귀농인”을 “귀농·귀촌인”으로 한다.

별지 제1호 서식을 삭제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